



고용보험 혜택

사업주 지원

- ❖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근로시간 단축·훈련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고용유지시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해 드림.
-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1인당 월 30만원(6개월간) 지급함.
- ❖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근로자를 업무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지급함.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20~30만원 을 지급함.
- ❖ **고용촉진 지원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고용보험법에서 지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50만원까지 지원함.
 - * 중증장애인, 취업대상자의 경우 연간 860만원까지 우대지원함.

근로자 지원

-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최대 240일)를 지급함.
 -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조기 취직을 하면 수당을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실업자가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함).
- ❖ **수강지원금 지원:** 이직예정자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함(훈련개시일로부터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산재보험 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 ❖ **요양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치유될때까지 요양비 지급함.
- ❖ **휴업급여:**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 지급함.
- ❖ **장해급여:** 치료종결후 장해정도(1~14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함.
- ❖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함.
- ❖ **장의비:** 근로자 사망시 장례를 시행한 유족 또는 사업주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함.
- ❖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장해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1일 3만원 내외 지급함.
-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그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함.

잠깐 퇴직연금 가입하셨나요?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이런점이 좋습니다.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가 2010. 12. 1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 높은 금리와 낮은 수수료로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합니다.
- 복잡한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좋은점

- 부담금 전액 손비처리로 세금 절감
- 분할·적립으로 일시 자금압박 방지
-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임금채권부담금 최대 50% 감면

근로자가 좋은점

- 퇴직급여 수급권 100% 보장
- 안정적 수익을 통한 퇴직소득 극대화
- 퇴직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가능
- 추가납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pension.kcomwel.or.kr>)를 참조하세요.

고용·산재보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보험 혜택은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안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안내』

안전하고 든든한 퇴직연금!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이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1588-0075 및 <http://pension.kcomwel.or.kr> 참조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일류기업이 되었습니다.

▲ 부정·비리 신고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 사이버감사실



고용 · 산재보험 가입대상

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 농업 · 임업(산재보험은 별목적 제외) · 어업 ·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사업은 제외.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 · 이직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건설공사 의무가입대상

-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 공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
- ※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 대상임(건설업 당연일괄 적용).

중소기업사업주, 자영업자, 해외파견자 임의 가입제도

-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없이 여객자동차사업, 화물자동차사업,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 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는 제외)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연간 고용보험료 55,590원을 납부하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자 수감훈련지원(정보화 기초, 외국어 과정 등), 근로자 수감지원금(연간 100만원 한도로 총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지원함.
- ※ 모든 사업장의 해외파견자도 2011.1.1부터 산재보험이 가능함단, 국외근로자 공급사업 제외).

보험관계 성립신고

- ※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 성립신고 제출시 : 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요망
- ※ 관할지사 찾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사찾기" 클릭

미가입시 또는 미신고시 유의사항

- ※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급여 징수함.
- ※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고용정보(피보험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산금 · 연체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근로자 고용정보(피보험자) 신고

- ※ 근로자 채용(퇴직)시 채용(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정보(고용종료) 신고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하여야 고용산재보험료가 정확하게 월별부과되지 않음.

신고 종류 및 사유	신고기한	신고방법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kcomwel.or.kr) • 고용센터 (www.ei.go.kr) • 관할지사 전자팩스
근로자의 전보, 휴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 고용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고용 · 산재보험의 인터넷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
 -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세요.

보험료 신고 · 납부

보험료 부담

- ※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1.35%~1.95%이고 근로자부담분(0.55%)은 매월 급여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며,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사업주가 전액부담 하셔야 함.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 월별 부과고지 방식
 - 대상 : 전 사업장(건설업 및 별목적 제외)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보험료를 산정 · 부과됨.
 - 월별 보험료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며, 고지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함.

자진신고 · 납부 방식

- 대상 : 건설업 및 별목적 사업장
 -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함.
 - 보험료(일시납 또는 최대 4회 분납) = 보수총액 × 보험료율
 - 보수총액 산정이 곤란한 건설공사의 경우
 - 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용 × 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신고시 유의사항

- ※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됨.
- ※ 65세 이상인 자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보험료는 만 64세에 속하는 달부터 납부 하지 않음.
-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 제외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적용됨.

